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1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02-2004-0065/02-6955-1004

1.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
다. 보관·관리기간: 2024.01.01 - 2024.12.31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㈜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신한금융투자,한국투자증권,대신증권,미래에셋증권,유진투자증권,메리츠증권,NH투자증권,KB증권,한화투자증권,현대차증권,유안타증권,SK증권,삼성증권,KB증권(구케이비),크레디트스위스증권,하이투자증권,키움증권,하나금융투자,KTB투자증권,비엔케이투자증권,이베스트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24.03.21	투자대상자산(집합투자증권) 추가 제 34 조 (투자대상 등)	(신설)	2.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 9 조제 21 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"이라 한다)
2024.07.26	이익배분 및 분배금 조항 명확화 제 41 조(이익분배)	(신설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零'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(-)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://dart.fss.or.kr을 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5.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대주회계법인	1년	154만원	서면계약					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 없음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 없음
□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
- 일치함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□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 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